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동대표 김중배 박상증 한명숙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723-5300 팩스: 723-5055
 천하 PSPD, 나무: 참여연대 / 천하만나우누리 go PSPD / 전자우편: pspd@nowmuri.net / 인터넷 www.pspd.org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시민감시국 담당: 이태호 국장: 723-5302)
 제 목 검찰의 진형구 구속 논평
 날 짜 1999년 7월 28일 (수) (총 쪽)

논 평

검찰의 조직적 개입 은폐한 보여주기식 정치쇼 진부장 개인구속차원에서 마무리 안될 말

1999년 7월 28일 (수)

1.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진형구 전公安부장을 직권남용과 제3자 개입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는 선에서 독자적인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김태정 전법무장관은 사법처리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의혹에 해답을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과이며 이번 수사의 초기부터 예상된 정치적 결론이라 할 수 있다.
2. 특별수사본부는 이번 조폐창 독자수사 과정에서 검찰사상 처음으로 대검을 압수수색하고 김태정 전법무장관을 소환 조사하며 이를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에 대한 보고 없이 진행하는 등 이례적으로 독자적 수사의 외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는 국민을 의식한 일회적인 정치적 제스처에 지나지 않는다. 특별검사제가 도입될 경우 불가피하게 겪어야 할 일을 앞당겨 처리한 것이므로 그다지 칭찬 받을 일도 아니고 검찰개혁에 있어서의 진전이라고 볼 수도 없다. 잘린 도마뱀 꼬리가 손안에서 꿈틀거린다고 도마뱀이 잡힌 것이 아니듯이, 검찰의 일회용 교육지계가 검찰개혁을 보증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3. 우리는 수사결과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태정 전법무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시公安검찰의 노조파괴 공작은 신공안이라는 명분으로 조폐창 뿐만 아니라 여러사업장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

어졌고 상명하복에 기반한 검찰동일체 원칙이 이제까지 검찰수사에 적용되어온 엄격한 원칙임을 고려할 때,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이 사후에나 구체적이지 않은 보고를 들었을 뿐이라는 검찰의 발표를 믿을 국민은 없다. 우리 검찰제도에서 검사 개인이 수사를 지휘하고 개인이 책임지는 사건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특히 공안차원에서 다루어진 노조관련 검찰개입이 검사개인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이는 사실상 검찰조직의 조직적인 노조파괴개입을 진형구 개인의 일로 축소은폐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강희복 조폐공사사장의 경우도 노동조합법 상 부당노동행위(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진형구 전 부장의 직권남용, 제3자 개입에 대한 공동정범으로도 사법처리요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노동관련사건으로서 이 사건의 파장 역시 의도적으로 축소하려 하고 있다.

4. 결국 검찰의 독자수사과정이나 그 수사결과는 특검제를 피해보려는 검찰의 일회용 제스처로서 검찰의 조직적인 노조파괴공작 개입 사실을 의도적으로 축소은폐하고 있다. 결국 이번 수사를 통해 검찰이 검찰을 수사하는데 따른 문제점, 즉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이라는 법리적 문제가 현실로도 분명히 드러났으며 특히 한국적 풍토에서 특별검사제와 같은 제도적인 해법이 불가피함을 다시 한 번 입증해주었다 할 것이다. 일회용 시도를 넘어서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와 상명하복의 검사동일체 원칙으로부터 자유로운 특별검사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천리안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pspd.org